

【 14 】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12.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정이유

- 양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심포니 도시 양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 평생학습추진위원회와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시민과 함께 평생토록 성장하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 등을 위해 평생학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실무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나. 평생학습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도록 함(안 제5조).
- 다. 동 추진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도록 함(안 제6조).
- 라.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도록 함(안 제10조).
- 마. 동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구축 및 평생학습 축제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도록 함(안 제11조).
- 바. 평생학습 센터는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정보공유를 통한

- 평생학습 사회 조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안 제14조).
- 아.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운영토록 함(안 제15조).
- 자. 평생학습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과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관계법령발췌서

평생교육법 제4조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 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9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예산수반사항

- 2008년도 : 92,160천원(홈페이지 제작 등)

□ 입법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07. 10. 15 ~ 11. 3(20일간)
- 예 고 결 과 : 의견 없었음

□ 기타참고사항

- 의원간담회 실시 : 2회('07. 11. 6, 11.20)
- 도내 시·군 평생학습 조례 제정 현황

(31개 시·군중 15시·군)

시·군	제 정 일	조 력 명	부서명	시·군	제 정 일	조 력 명	부서명
수원시	2003. 6.24	수원시평생학습조례	체육 청소년과	고양시	2007. 1.12	고양시평생학습조례	교육체육과
부천시	2003. 4.10	부천시평생학습조례	교육체육과	안양시	2007. 1. 4	안양시평생학습조례	체육 청소년과
용인시	2006. 1.11	용인시평생학습조례	교육체육과	안산시	2005.10.20	안산시평생학습조례	주민생활지원과
남양주시	2007. 5.17	남양주시평생학습조례	가족여성과	평택시	2006. 5.18	평택시평생학습조례	총무과
광명시	2005.11.22	광명시평생학습원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평생학습 청소년과	시흥시	2006.2.16	시흥시평생학습조례	평생학습과
군포시	1997.10.11	군포시평생교육추진위원회조례	주민생활 지원과	이천시	2004. 7.23	이천시평생학습조례	평생학습과
구리시	2005.12.21	구리시친환경평생학습 조례	정책지원단	포천시	2007. 5. 2	포천시평생학습조례	주민생활 지원과
과천시	2006.12.28	과천시평생학습지원조례	교육지원과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심포니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학습"이라 함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적극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는 양주시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업무추진 및 평생학습 축제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청 평생학습 관련 업무관련 담당국장·주민생활지원과장을 당연직으

로 하며,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원
 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문화·체육관련 단체, 사설 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교육청의 평생학습 관련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
- ④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 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담당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개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축제 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결정
5.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회의를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회원은 교육청관계자, 평생학습기관·단체, 대학(교)의 평생교육실무자, 평생교육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평생학습추진실무협의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수립(기본) 및 평가보고(예산집행·결산 포함)
3.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평생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평생 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하여 양주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과 평생학습 단체 및 평생학습시설의 상호연계체제 구축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학습 강사 관리 및 학점은행제 운영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7.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학습 봄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8. 지역 전통문화 및 정신문화 개발과 지역산업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평생교육사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수강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

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평생학습 협력기관 · 시설 지정) 시장은 관내의 유관기관 · 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 · 시설로 지정 ·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